

제 359 회 임시 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5. 6. 17.(화)

#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1.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성 영 순

#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조철기 의원 등 3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32호

○ 발 의 자 : 조철기 대표발의, 안장현, 양경모, 정광섭, 홍기후, 김복만, 방한일, 윤기형, 김민수, 유성재, 신순옥, 이지윤, 박미옥, 박정수, 편삼범, 이연희, 이정우, 김옥수, 박기영, 이해선, 김석곤, 고광철, 이종화, 지민규, 윤희신, 주진하, 이재운, 조길연,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박정식, 이철수 의원(33인)

○ 발의일자 : 2025. 5. 26.

○ 회부일자 : 2025. 5. 30.

### 2.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 회의 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친환경 가치 확산, 행정 효율화, 예산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다. 조례 적용대상 규정(안 제4조)
- 라. 종이 없는 회의 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안 제7조)

### 4. 검토의견

#### □ 법적 근거 및 타당성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행정방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사무 영역인 친환경 행정, 자원 절약 등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제28조(조례) 제정 요건에 부합함

#### □ 주요내용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서 디지털 기술을 우선 활용하고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한 조치를 병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이 없는 회의 추진에 따른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함
-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과 안 제6조(시행계획 수립)는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화를 위한 규정으로, 중장기적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 부담을 최소화함

- 안 제7조(사업 추진)는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홍보·교육 등 다각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전자기기 보급 및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될 경우 실질적인 전환이 가능함
- 안 제8조(실적 평가 등)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기능함

##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친환경 회의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탄소중립·예산절감·행정효율 제고 등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 도입이라는 점에서 시의성과 공익성이 높음
- 다만, 안 제4조 적용범위에 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와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은 제외되어 있음.
  - 이는 충남개발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은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 설치·운영 조례」,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별도의 운영 조례 적용을 받기 때문으로
  - 추후, 각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탄소배출 감소라는 충청남도 핵심전략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조례안 시행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회의의 디지털 회의(태블릿,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등) 전환, 보안 기준, 인센티브 제도화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약 3~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조례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